<의안번호 제2007-35호>

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. 9. 21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7. 9. 27.

2. 제정이유

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(안 제2조)

○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판매시설, 위락시설, 의료시설 중 병원

나. 미술장식의 설치·절차 등(안 제3조)

○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, 심의 후 통보

○ 정부·지자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은 심의 생략

다.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(안 제4조)

○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1/1000이상

○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: 5/1000 이상

라.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미술장식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바. 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
○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

○ 위촉위원은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군수가 위촉, 문화관광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

○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

사. 위원회의 기능(안 제8조)

○ 미술장식의 가격, 예술성, 환경과의 조화,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

아. 위원회 회의(안 제10조)

○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・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・제24조・제25조,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7. 6. 14. ~ 7. 3.)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○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

⑴ 조례안 제7조(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)의 조문형식의 표기를 열거할 때에는「항」을 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**본문 다음에는「호」로 1, 2, 3 등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**

본문 다음에「항」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조문형식의 표기이므로 **본문을 ①항으로 하고, 그 다음에 ②항등으로 조문형식의 표기를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**

⑵ 조례안 제7조 "제목" 과 본문 내용 중 "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" 의 용어 표기는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**"위원회" 라 한다고 약칭을 표현**하였으므로 제7조의 제목과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**"위원회"** 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,

같은 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 “미술·건축·환경·**공간·디자인**·도시계획문야” 의 **공간·디자인**의 가운뎃점은 잘못된 표기이므로 “**공간디자인**” 으로 가운뎃점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6. 참고자료

○ 관련법령 발췌

〔문화예술진흥법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

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23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) 법 제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"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제24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, 주차장·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1만제곱미터(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)이상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,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6.13>
1.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·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3.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·집회장 및 관람장
4. 판매 및 영업시설
5. 의료시설중 병원
6. 업무시설
7. 숙박시설
8. 위락시설
9. 공공용시설중 방송국·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

②법 제11조제1항에서 "건축"이라 함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. <개정 2005.6.13>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건축비용"이라 함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)을 말한다. 다만,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<개정 2005.6.13>

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미술장식"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1. 회화·조각·공예·사진·서예 등 조형예술물
2. 벽화·분수대·상징탑 등 환경조형물

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. [전문개정 2000.10.23]

제24조의2(미술장식의 설치절차·방법)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·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에게,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·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·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00.10.23]

제24조의3(미술장식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미술장식의 가격
2. 미술장식의 예술성
3.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
4.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
5.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
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00.10.23]

제25조(미술장식의 철거·훼손시의 조치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·훼손·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